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2호 2014. 4. 24.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4-5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32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4 - 5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2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4 - 6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4년 4월 2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하여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하고 태풍 시에는 어선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마도동 151-11번지선 공유수면(저도 항)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465㎡(직접 : 130㎡, 간접 : 335㎡)
 - 선착장 : L=26.0m, B=5.0m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4년 4월 22일~2029년 4월 21일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332호(3)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2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4 - 7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4년 4월 2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하여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하고 태풍 시에는 어선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7번지 공유수면(중촌 항)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80㎡(직접 : 175.0㎡, 간접 : 205.0㎡)
 - 선착장 : L=36.0m, B=5.0m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4년 4월 22일~2029년 4월 21일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332호(4)

승 인 조 건

1. 본 사업은 2014년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선착장 협소로 인하여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 하고 태풍시에는 어선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.
2. 동 시설물 운용 시,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(폐기물)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3. 선박의 이 · 접안 및 유류 급유 시,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합니다.
4. 또한,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5.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해역이용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.
6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화관광과)에 알려야 합니다.
7.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 · 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8.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 합니다.
9.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수령 후,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